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98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등록대상동물 등에 대한 중성화 수술 시행 및 비용 지원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8.

다.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유실·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분양하는 동물이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 동

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등록대상동물 등에 대한 중성화 수술 시행 및 비용 지원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동물원 등에 기증·분양하는 동물에 대하여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하거나 그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고 유실·유기동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 ----- ----- ----- -----.

현행	개정안
1. 2. (생략) 3. <u>중성화(中性化)</u>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중성화</u>-----.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시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성화 수술은 생식샘과 관련기관 등을 제거하여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로, 암컷의 경우 난소절제술(ovariectomy, OVE) 또는 난소자궁절제술(ovariohysterectomy, OHE)의 방법이 시행되고 수컷의 경우 고환절제술(orchietomy)이 시행됨²⁾.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성화 수술의 대두 배경 중 특히 유실·유기 동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의 일반적인 지원규정에 근거하여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3741-338)” 사업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 또는 그 잠재적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실외사육견³⁾(마당개) 및 길고양이 대상의 중성화수술을 지원⁴⁾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실외사육견·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산출 세부내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1,500	1,560	1,404	1,404	17,550마리×40만원 ×20%(국비 지원비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3,420	3,820	4,742	4,477	111,925마리×20만원 ×20%(국비 지원비율)

주1: 두 사업은 2023년에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3741-338)의 내역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3741-338) 사업 중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운영됨

주2: 실외사육견(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 길고양이(국비 20%, 지방비 80%)

다만, 일각에서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의 실행행률이 2022년 61.6%, 2023년 79.9%로 낮고, 지원 마릿수가 2025년 본예산 편성

3)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

4)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동물별로 상이함.

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의 경우 농촌지역 등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는 소유자, 유실·유기견 등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원 규모는 마리당 40만원을 한도(암컷 기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로 함.

②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의 경우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민원인의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이를 위탁기관에 전달하고, 위탁기관 등은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 후 방사함. 이 후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사업 실적을 확인하여 예산을 지급함.

기준 17,550마리에 불과한바, 유실·유기 동물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마릿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

구 분	합 계	개	고양이	기타
2020	130,401마리	95,261마리	33,572마리	1,568마리
2021	118,273마리	84,723마리	32,098마리	1,452마리
2022	113,440마리	80,393마리	31,525마리	1,522마리
2023	113,072마리	80,467마리	30,889마리	1,716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이에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⁵⁾이나 현행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증·분양하는 동물 중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⁶⁾

그 취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유기·유실 동물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응하려는 것

5)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6) 참고로 개정안 중 안 제18조는 단순 자구정리에 해당함

으로 생각됨.

개정안을 조문별로 검토해 보면,

첫째, 안 제16조제4항은 중성화수술 및 그 비용 지원대상을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대상이 실외사육견에 한정되지 않고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이기만 하면 모두 포함되는바, 수술 및 비용지원 대상의 범위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된 개는 2023년 기준 3,244,234마리로서,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중성화 지원 실외사육견 마릿수인 17,550마리보다 많은 수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또한, 등록대상동물은 소유자가 있는 동물이고, 중성화 수술은 해당동물의 생식기능을 비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것인바,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선행될 필요가 있는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45조제3항은 기증·분양하는 동물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성화수술을 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현행법 제45조제4항7)에 따라 기증·분

7) 「동물보호법」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양 요건을 조례로 정하면서, 기증·분양하는 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받는 것을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기증·분양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 시·도별 중성화 수술 동의자에 대한 우선 기증·분양 조례 존재 여부 】

구분	조례 내 수술 동의자에 대한 우선 기증·분양 규정	
	존재	부재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주: 각 조례의 세부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뒷부분의 참고자료에 기재함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성화수술을 직접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동물을 기증·분양받는 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6조제4항에서는 중성화 수술 및 지원 대상으로 등록대상동물, 즉 ‘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5조제3항에서는 그 대상을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여 고양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의 동물 역시 포함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바,

기증·분양하는 동물과 그 외 일반적인 반려동물 등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 및 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중성화 지원 여부 】

구 분	개 인 등 의 소 유	지 자 체 소 유	그 외
개	-등록대상동물: ○ -그 외: ×	○	×
고양이	×	○	×
그 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그 외: ×	×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16조제4항 및 안 제45조제3항에 따라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받는 주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받는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6조제4항의 경우 중성화 수술의 대상이 등록대상동물이므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받는 주체는 현행법 제16조8)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주체인 “소유자등”⁹⁾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8)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안 제45조제3항의 경우 중성화 수술의 대상이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므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받는 주체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증·분양받은 자”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은 개체 수 관리·조절이 어려운 동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등 소유자에 의해 개체 수 관리가 가능한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필요성은 낮으므로, 안 제16조제4항의 신설에 신중할 필요하다는 의견임.¹⁰⁾

한편, 안 제45조제3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 등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중성화 수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사람을 말한다.

10) 또한, 현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은 동물보호법 제4조를 근거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 고

시·도별 중성화 수술 동의자에 대한 우선 기증·분양 조례

시·도	조례	상세 내용
서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6조제3항	제16조(동물의 반환 등)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u>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u>
부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제18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u>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u>
인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제17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④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u>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u>
대구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10조제2항	제10조(동물의 기증·분양) ② 구청장·군수는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u>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u> 다만,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기증이나 분양 받는 사람에게는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	조례	상세 내용
대전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20조제2항	제20조(동물의 기증·분양) ② 시장 등은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u>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u> 다만, <u>중성화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기증받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u>
광주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제15조제1항	제15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장은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u>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기증 또는 분양하며, 기증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u>
울산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1조제1항	제11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분양하는 경우에는 <u>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며, 기증·분양을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u>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2(동물의 기증·분양) ②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 등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분양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u>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u>
경기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18조제2항	제18조(동물의 분양·기증 등) ② 도지사는 동물을 <u>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분양·기증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 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기증할 수 있다.</u>

시·도	조례	상세 내용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동물의 기증·분양) ②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음. 다만,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기증이나 분양 받는 사람에게 는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충북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15조제2항	제15조(동물의 기증·분양) ② 도지사는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기증·분양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분양할 수 있다.
충남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4조제4항	제14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④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실·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분양·기증 및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경북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4항	제15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④ 도지사는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유실·유기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기증·분양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기증·분양받은 자의 부담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할 수 있다.
경남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제2항	제21조(동물의 기증·분양)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 기증·분양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기증·분양할 수 있다.

시·도	조례	상세 내용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	제13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기증·분양) ④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u>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u>
전남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제12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④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u>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u>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우선 기증·분양 규정 부재